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4일, 권칠승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 8. 23)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9.24.) 상정/심사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상정/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제1차 전체회의(2026.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
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권칠승의원)

화성시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였음.

시흥시도 2023년 12월 기준 총 인구 58만 5,20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라 비교할 때 화성시(인구: 88만 7,015명)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시(인구: 80만 6,067명)보다 인구가 많고, 시흥시(인구: 51만 2,030명)는 시법원이 있는 파주시(인구: 48만 3,245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법원조차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대도시 기준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으로서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는 시·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동 기준에 부합하는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2, 별표 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시·군법원의 설치에 인구 수뿐만 아니라 사건 수, 인근 지역에 각급 법

원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 설치 대상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